

이륜형 및 삼륜형 이륜자동차 비상점멸표시등 작동기준(제79조의2제2항 관련)

1. 작동조건

- 가. 비상점멸표시등은 모든 방향지시등을 동시에 작동되는 구조이어야 하고, 독립된 조종장치에 의해 작동될 것
- 나. 배기량이 50cc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 비상점멸표시등은 충돌 시 또는 긴급제동신호 소등 후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수동으로 소등할 수도 있을 것

2. 표시장치

-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점멸식 적색 표시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방향지시등과 연동되어 작동되도록 할 것

3. 그 밖의 기준

- 가. 1분간 90±30회로 점멸하는 구조일 것
- 나. 조종장치 작동 후 1초 이내에 빛이 점등되어야 하고 1.5초 이내에 소등될 것